

# 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종합건설주식회사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 대표이사 ◈◆◆ 전화·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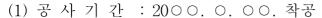
#### 공사대금청구의 소

#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,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〇〇. 〇. 〇〇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.

### 청 구 원 인

1. 원고는 2000. O. OO.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건축중인 OO시 OO구 OO로 OO 소재 ©©연립주택(25세대)의 도배 및 바닥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



(2) 총 대 금:금 38.000.000원

(3) 대금지급방법 : 공사착수시에 선급금으로 금 5,000,000원을 지급하고, 나머지는 공사가 끝나는 즉시 전액 지급하기로 함.

- 3.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33,000,000원 및 공사완공 다음날인 20○ ○. ○○. ○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###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

1. 갑 제2호증 통고서(내용증명우편)

###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#### ○○지방법원 귀중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□ 소멸시효일람표.**
제출부수	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절차 및 기 간	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
#### 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: 민법 제467 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